

의안번호	제626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328회)

##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3월 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26
------------	-----

제출연월일 : 2014년 3월 4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1. 제안사유

-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강화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영위하기 위하여 민·관·경 협력체제인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협의회 기능(안 제3조)
  -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등 협의
-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안 제4조 및 제5조)
  - 위원 25명 이내, 당연직 위원(도지사, 도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 위촉직 위원 :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단체장 및 전문가
-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추진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증진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3. 의안전문 : 불 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 6. 비용추계서 : 불 임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으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충북을 영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충청북도에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2.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위촉)** ①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사회안전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기관에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출국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도지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도록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간사는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참여기관·단체의 업무담당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충청북도 지역치안실무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 하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소집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도지사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목적과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 1. 사업개요

-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사항 등 협의

### 2. 비용 발생원인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여비 등 실비 지급  
수요 발생

### 3. 관련조문 : 안 제14조(수당 등)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위촉위원 전원(21명) 참석, 회의 연 3회 개최
- 나. 추계 결과 : 4,410천원/연 (21명 위원 × 70,000원 참석수당 × 3회)
-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편성시 정책기획관실 위원회 운영수당(Pool)에 반영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14년)	2차년도 ('15년)	3차년도 ('16년)	4차년도 ('17년)	5차년도 ('18년)	계
수 당	4,410	4,410	4,410	4,410	4,410	22,050

### 6. 작성자 : 안전행정국 총무과장 이성수